

第 5 回

城北區 議會 本會議 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 城北區 議會

1970. 7. 11日 17時 09分

議事 日程(第 1 次 本會議)

1. 第5回 城北區 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 件..... 2 面
2. 城北區 議會 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 2 面
3. 城北區 議會 研究委員會 規程案議決의 件..... 7 面

附議된 案件

1. 城北區議會特別委員會등의 構成 準備小委員會活動狀況報告..... 1 面
2. 第5回 城北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 件..... 2 面
3. 城北區 議會 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 2 面
4. 特別委員會委員長 幹事人事..... 6 面
5. 城北區 議會研究委員會規定案議決의 件..... 7 面
6. 會議錄署 名議員選任의 件..... 19 面

○ 議長 李敏衡 : 현재 참석의원 수 3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5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 幹事 朴承萬 :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5회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의사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李萬載議員 외 14인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오늘 제5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의사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성북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북구 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논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城北區議會特別委員會등의 構成準備小委員會活動狀況報告

○ 議長 李敏衡 :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6월 27일 제4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성북구 의회 특별위원회등의 구성준비 소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소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제4회 임시회에서 성북구의회 특별위원회와 연구위원회 구성의 건을 위임받은 소위원회는 당일 12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와 연구위원회의 종류, 명칭, 위원수, 위원의 배정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제2차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2일 18시부터 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제2차 소위원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의원배정 작업을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7월 5일 17시에 11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연구위원회 규정을 심의 확정하고 행정위원회, 재무위원회, 시민복지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건설위원회, 보건위원회 등 6개 연구위원회에 약 6명씩의 위원을 두기로 하고 제2차 회의는 논의된 특별위원회의 정원을 일부 조정 합의 하였습니다.

인원조정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은 모든 특별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차에 걸친 소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성북구의회의 의정 발전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의결안을 적극 수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시 12분

2. 第5回 城北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 件

○ 議長 李敏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사일정을 감안해 볼때 오늘 하루만으로 충분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개의 시간도 저녁시간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월 11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기는 오늘 하루입니다.

(의석에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하는 이 있음)

회기 연장은 회의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3분

3. 城北區議會 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성북구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성북구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위원회에서 합의 된대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특별위원회 위원 배정 관계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이 있음)

○ 金光鎬 議員: 돈암2동의 김광호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여기 특별위원회의 배정 추천명부 그 다음에 3차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지신 것 같은데 지금 의장님 말씀에 보면 각 위원회 어느 면을 보고서 이런 위원회에다 배정을 하였는지 또 연구위원회가 다섯개, 여섯개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소위원회에서 연구위원회에 각 위원을 소속했으면 어떠한 개인의 이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어떠한 면을 보고 소위원회에서 배정을 하였는지 그 배경 설명을 의장님께 잠깐 들어보기 위해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敏衡: 연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안건에 나와있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특별위원회의 배정 추천명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처음에는 소위원회에서 각기 10명, 11분 이렇게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이상을 12월 1일부터 예산 결산을 하는데 그 소관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되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인원을 좀 많이 배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현재도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청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난번 4차 회의에서 청원을 특별위원회에 위임을 했기때문에 또 빨리 구성을 해야되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도 우기를 앞두고 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되고 또 현재도 우리 의원님 중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셔야 될 분이 계시고 해서 이 4가지 위원회만을 급히 구성을 해야되겠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행정조사나 행정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나 행정감사특별위원회도 또 사안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이 4개의 위원회를 우선 급하게 구성을 해서... 이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위원회의 사항이 끝나면 또 해체했다가 또다시 구성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시작한지가 아직 3개월에 불과합니다만은 저희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모든 경력과 또 그분의 특성을 일일히 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 한 것은 우선 숫자적으로 분산해서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하였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또 일시의장단에게 일임을 하였고 또 의원님들에 대한 명단과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무국하고 협의하고 해서 우선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은 특별하게 의원님들이 여기 44분 어느 의원님이라고해서 어느 특별위원회에 가서 어느 일을 못하시겠습니까만은 다 같은 입장이라고 봐서 이번에는 숫자적으로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그 명단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위

원장과 간사를 호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시면 우선 특별위원회 의석 배정에 대한 것을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2분

그러면 성북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두게 되어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은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에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장자인 북정안의원님께서 주재 해 주시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연장자인 오채영의원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최연장의원님이 김덕수의원님이십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 주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조기찬의원님께서 연장이시니까 조기찬의원님께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해 드린 4분 의원님께서서는 지정된 회의장에서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의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찬의원님, 김덕수의원님, 오채영의원님, 북정안의원님.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보게되면 1)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2)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네분 연장되시는 의원님께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층 본회의장입니다.

그리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2층 소회의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2층 의원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2층 의원휴게실입니다.

가셔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 네분 아시죠?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이 있음)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까? 연장 의원은 잠깐 들어가 계시죠.

김형구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炯九 議員: 안녕하십니까? 안암동 김형구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어머님 상중에 바쁘신 데에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조문을 하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건을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갑구, 을구를 절대로 분리시키지 마시고 모든 일을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람 김형구는 갑구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언제 뭐 의원님들하고 위원장이다 뭐다 해서 당에 대한 얘기는 한번도 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엇때문에 갑구, 을구를 꼭 분리해야 되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우리 44분 의원은 성북구 의회에서 다 똑같은 자격을 가지시고 또한 모든 일에 다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과 경험으로 봐서 의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야 되는지를 의장님께서서는 개인면담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성에 맞는 분과에 배석을 해 주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그 분과위원들이 모여서 당연히 위원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이것이 민주적인 방식이고 또 우리가 지방 자치제 참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조금 있다가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에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현명하신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敏衡: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위원회에서는 갑·을구 얘기도 나왔고 지역 안배 얘기도 나왔고 여러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분명히 이번 특위 배정은 우리 의회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특위에 가시든 그 일을 못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숫자적으로 배정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고 또 위원장님은 간사를 선임하시고 보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형구의원님?

○ 金炯九 議員: 예

○ 議長 李敏衡: 아까 네분 연장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정된 장소에 가셔서 시간은 15 분입니다만은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연락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셔서 의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7분

4. 特別委員會委員長・幹事人事

○ 議長 李敏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의회 의정 활동에 반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특별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 7억에 해당되는 추경예산이 벌써 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또 앞으로 12월 1일 부터 30일간 정기회의때 예산결산을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인원이 더 많게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아서 일

하실 위원장에는 신중현의원, 간사에는 황호산 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현의원님, 황호산의원님

(신중현의원, 황호산의원 인사)

○ 申宗鉉 議員 :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議長 李敏衡 : 위원장님 특별히 인사하실 말씀있으십니까?

○ 申宗鉉 議員 : 없습니다.

○ 議長 李敏衡 : 다음에는 현재 저희 의회에도 청원과 많은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진정사항과 청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부단히 투쟁하건 그런 싸움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우리 성북구민을 대신해서 행정부와 피나는 노력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역시 여자가 떼를 잘 쓰는 모양이죠? 한춘자의원님하고 간사에 최계락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의원, 최계락의원 인사)

○ 崔桂洛 議員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 議長 李敏衡 : 다음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입니다.

지금 우기가 닥쳐와서 작년에도 저희 성북구는 이 우기의 재해로 인해 많은 재산 피해를 내서 신문이나 T·V에 많이 보도 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맡아서 수고해 주실 위원장에는 김승태의원님과 간사는 정철식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鄭喆植 議長(의석에서 : 저는 아직 승낙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 議長 李敏衡 : 그것은 위원회에서 하실 말씀이고 본회의에서 하실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님이 인사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시죠?

(김승태의원, 인사)

○ 金承泰 議員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부터 모양이 나쁘게 되어서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북구를 재해없는 살기좋은 성북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 議長 李敏衡 :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34조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품위등에 대해 앞으로 다루어 가시겠습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장에는 가장 연장자이신 조기찬의원님이 되셨고 간사에는 신쾌호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조기찬의원님과 신쾌호의원님은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찬의원, 신쾌호의원 인사)

(일동 박수)

○ 議長 李敏衡 : 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특별위원회에는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8 : 04

5. 城北區 議會研究委員會 規程議決의 件

○ 議長 李敏衡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의회 연구위원회 규정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연구위원회 안은 많은 의원님들이 희망에 의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좀더 효율적으로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많은 의원님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안을 발의하신 이만재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의원님 나오시죠.

○ 李萬載 議員 : 안녕하십니까? 보문동출신 이만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성북구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3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의원동지 여러분들과 더불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성북구의회에도 각종 진정, 청원이 들어오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안 인준 등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제도와 연구위원회를 심분 활용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우리 의원동지 여러 분들이 앞장서 유도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북구의회 연구위원회 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위원회 규정안은 사회, 경제 발전과 행정수요의 증가로 날로 전문화, 다양화, 복잡화하는 현대 도시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임의적, 자율적 기구로서 구성하는 연구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분야별 연구위원회에서 연구 분석한 각종 자료를 본 회의 및 특별위원회에 심의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의안 발의 및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장에 규정한 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과는 구별되는 자율적, 내부적 임의대로 기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연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 전문분야별로 연구위원회를 구성, 의회운영연구위원회 행정연구위원회, 재무연구위원회, 시민복지연구위원회, 도시정비연구위원회, 건설연구위원회, 보건연구위원회 7개 연구위원회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연구분과위원 배정의 전권을 갖고 있는 의장단에게 요청이 있다면 의욕적으로 의회활동과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전의원 여러분에게 불만요소가 없도록 기준이나 안배 능력 전문성을 두루 살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07

○ 議長 李敏衡: 이만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연구위원회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소위원회에서 대체토론과 축조심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 안을 오늘 그간에 자료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집에서도 연구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연구위원회 규정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질의 하실 분? 네, 김승태의원님

○ 金承泰 議員(의석에서): 내용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 2항에 보면...

○ 議長 李敏衡: 네 10조 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承泰 議員: 먼저 자구수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구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할 안건 및 자료는 연구위원장 책임하에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장단 및 연구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구위원이 아니고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자구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議長 李敏衡: 위원회 위원으로 말이죠?

○ 金承泰 議員(의석에서): 연구위원이라면 전문위원회나 연구위원이 따로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연구위원회 위원에게 사전 배부하여야 한다면 자구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議長 李敏衡: 네, 지금 김승태의원께서 제10조 제2항에 연구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할 안건 및 자료는 연구위원장 책임하에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장단 및 연구위원회 위원에게 사전 배부하여야 한다는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이 있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吳案泳 議員: 네

○ 議長 李敏衡: 오채영의원님. 말씀하시죠?

○ 吳案泳 議員(의석에서): 여기에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회 위원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의원속에 연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연구위원회를 표시하기 위해서 연구위원이라고 표시한 것 같습니다.

○ 議長 李敏衡: 네, 자구수정에 관한 찬반토론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위원회 위원이나 연구위원이나 하는 찬반토론입니다.

○ 黃鎬山 議員(의석에서): 여기서는 국어학자가 아니니까 국어학자에게 문의해서 자구 수정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 議長 李敏衡: 그럼 자구수정없이 그대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위임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연구위원회위원이나 연구위원이나 우리가 전문적으로 못하니까 그대로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승태의원님 어떻게 양해가 되십니까? 연구위원회 위원이나, 연구위원이나 같은 말이라는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 金承泰 議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연구위원회 위원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찬반토론이니 그런것으로서 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또 우리 의회 모양이 나빠질 것 같아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 議長 李敏衡: 그러면 어떻게 이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단에게 위임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많음)

○ 金承泰 議員(의석에서): 아니, 아니 제가 분명히 지금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거나 찬반토론을 하자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저의 본인의 의견은 확실히 아직도 연구위원회 위원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가지고 찬반토론까지 할만한

개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 議長 李敏衡: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가 있으신 분 네, 김정규 의원님 뒤에서 말씀하시니까 잘 안들리네요 이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시죠?

○ 金正圭 議員: 석관 1동의 김정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운영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어찌하여 의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하고 행정분과위원장이 간사가 되어야 하며 각 분과위원장이 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 간사가 운영위원장이 그리고 운영위원회 간사가 대표 간사가 된다"는 부문에 대해서 제가 이 8조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조를 보면 대표간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1항에 대표간사는 각 연구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과 의결 사항 및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 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건화 하여 발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대표간사는 각 연구위원회에서 자료 수집의 중복을 피하고 연구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각 연구위원장으로 부터 자료 목록을 제출받아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라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 명의로 수집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안대로라면 의원의 44명을 대표하여 의장과 대표간사가 성북구의회를 관장하여 일을 다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께서는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각 분과위원회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무시해 버리는 처사이고, 각 분과위원장의 권위를 떨어 버리는 무원칙함을 지적하며 운영위원회의 기본 목적은 회의의 기본 목적은 회기 중에 안건 처리를 위하여 사전 조정하고 각 분과 위원회에서 안건을 조정하는 역할의 임무가 원칙이라고 보는 데 마치 의회의 전기능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누구와 상의해서 만들어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議長 李敏衡: 네, 지금 김정규의원님께서

제8조 대표간사에 대한 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표간사는 각 연구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과 의결사항 및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 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전화하여 의안으로 발의한다.

대표간사는 각 연구위원회에서 자료수집의 중복을 피하고 연구자료에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각 연구위원장으로 부터 자료 목록을 제출받아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라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 명의로 수집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규의원님 이 안을, 8조를 삭제하자는 말씀입니까? 수정하자는 말씀입니까?

○ 金正圭 議員(의석에서): 제가 발언하는 중에 운영위원회의 기본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회기 중에 안전을 사전 협의, 조정하고 또 분과연구위원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의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기본 뜻이라고, 말 그대로 기본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하여 이 방대한 권한을 의장과 그 대표간사가 갖게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議長 李敏衡: 저희들이 국회 법이나 광역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합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이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즉,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연구위원회 위원장님의 고리 역할을 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연구된 사항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취합을 하고 배분해 주는 중간 역할을 운영위원회에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의 어떠한 안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나 광역의회에서 하는 것과 같은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나 연구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취합을 해서 이것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에게 자료도 배분하고 또 검토도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특별한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도 역시 4개 특별위원회, 6개 연구위원회가 있는 데 각자 어느 위원회에서 무엇을 하고

하는지 예를 들면 앞으로 연구위원회에서 어느 청원이나 진정을 하다 보면 앞으로 다른 공청회같은 것도 해야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어떠한 연구위원회에서는 뭐 공청회 준비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다하고 있는 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면 같은 위원으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런 때에는 이 연구위원회, 그러니까 연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가 되면 바로 그것이 전체 위원님들에게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만든 것입니다.

특별한 딴 뜻은 없습니다.

김정규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뭐 딴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金正圭 議員(의석에서): 의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충분히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어찌하여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대표간사가 되어야 하며 만약 지금 8조항에 보면 모든 것을 대표간사가 먼저 분과연구위원회에서 자체적인 독립성을 독자성을 침해하는 문제이고 또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에게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않고 의장에게 보고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 議長 李敏衡: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내 주시죠? 왜냐하면 대표간사를 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대표간사를 하지말고 그러면 대표간사를 별도로 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사무국에서 대행을 한다라든지 어떠한 수정안을 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8조를 삭제하라든지 그런 말씀이 게셔야 되겠죠.

([의장]하는 이 있음)

네, 김정규의원님 말씀 다 마치고...

○ 金正圭 議員: 예, 시간이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대비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 議長 李敏衡: 운영위원회 그 안만 말입니까?

○ 金正圭 議員: 네
(손드는 이 있음)

○ 議長 李敏衡: 그다음 예, 김종환의원님 말씀하시죠?

○ 金鍾煥 議員(의석에서): 저는 반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개 연구분과와 4개특별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장님 말씀에는 위원장께서 당연직으로서 운영연구위원회에 들어가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연구위원회에서 표결을 붙이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정하시더라도 그 내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신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즉, 방법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議長 李敏衡: 지금 김종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거죠? 이 8조에 대해서? 네, “운영위원회 간사는 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연구위원회 위원장님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 金鍾煥 議員: 네

○ 議長 李敏衡: 네, 이런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8조를 대표 간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를 호선한다”라고 이렇게 정정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있으신 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김종환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재청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 대표간사에 대한 선임의 문제입니다.

이 원안에는 “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대표간사가 된다”라는 안과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는 그런 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하는 이 있음)

김정규의원님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金正圭 議員: 저는 시간을 갖고 좀더 의논하고 숙지해서 결정하자는 것을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라는 것을 의회가 의회속에서 안건 처리를 기할 때 사전 조정을 하고 또 각 연구분과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데 그 일정을 조정하는 데 의미 외에는 별로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지금과 같이 나와 있는 안과 달리 별도로 운영위원장과 그 간사가 선출이 되어서 운영위원회를 기본 뜻에 의해서 움직여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議長 李敏衡: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하자는 안이십니까? 원칙적으로 폐기하자는 안입니까 연기하자는 말씀이십니까?

○ 金正圭 議員(의석에서): 수정안이죠. 이게

○ 議長 李敏衡: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수정안을?

○ 金正圭 議員(의석에서): 운영위원회 기본 목적이라는 것은 회기 중에 의사일정을 조정을 하고 사전 조정을 하고 또 각 연구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일정을 사전 조정을 하고 협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즉, 연구운영위원회는 지금 내용은 안과는 달리 우리 다른 연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장과 간사 그 위원회를 똑같이 선임해서 위원회를 선임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수정안입니다.

○ 議長 李敏衡: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를 다른 연구위원회와 같이 위원으로 배정을 하고 위원장도 선출을 하고 간사도 선출하자, 호선하자 그 말씀이신가요?

○ 金正圭 議員(의석에서): 네

○ 議長 李敏衡: 지난 번 소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되어있지도 않고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장단으로 구성한다”라고 즉, 말하자면 대체토론과 축조심의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 안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연구위원회 이것이 바로 연구위원회입니다.

국회나 광역의회의 운영위원회하고 조금 결부시키는 것 같은 데

이건 바로 연구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의정활동을 좀더 심도있게 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연계해서 하나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자는 그런 안이었습시다.

목적, 취지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는 조금 달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김정규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 회의에서 번안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 국회나 광역의회 운영위원회와는 좀 다른 운영위원회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의사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기, 김갑제위원이 먼저 손드신 것 같은 데...

○ 金甲濟 議員(의석에서): 나는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또는 연구분과위원회 등은 지금 출발입니다.

출발을 할 적에 우리가 소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해서 만든 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상위법인 시의회나 국회법에 자꾸 견주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운영을 해 보면서 차차 시정을 하고 수정을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보면서 이것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낭비로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의장님 말씀이 김정규의원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 議長 李敏衡: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원안에 대한 동의였습니다.

네, 황호산의원님

○ 黃鎬山 議員(의석에서): 지난 번 소위원회에서 준비해 오라 했지, 그 준비된 대로 통과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시간을 갖고 하는 것보다도 문제점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 가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통과하자, 통과하지말고 수정해서 하자 이런 것이 분분하면 그걸 가지고 다수결 원칙이라든지 그렇게 적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議長 李敏衡: 소위원회에서 이 안을 대체토론을 했고 또 축조심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소위원회에 이 의견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본 의회에서도 충분히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위원회 규정안 자체를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인 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이 이 위원회 연구위원회 구성을 찬성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확실하게 수정동의한을 내주시는 방법과 현재 나온 얘기가 6조하고 8조입니다.

의회운영연구위원회의 3항 “의회운영연구위원회 간사는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하는 이 사항하고 또 하나는 구성이 제1항의 “의회운영위원은 의장단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한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라고 되는데 1항과 3항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단과 의장단으로 한나라는 얘기였었고 거기에 대한 간사는 행정위원회 위원장이 한나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소위원회 의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의장!]하는 이 있음)

○ 金知雲 議員: 종암 2동의 김지운입니다.
 우선 지금 김정규의원이나 황호산의원이 발언한 그 내용은 충분히 법률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제가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의회 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중간사는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각 분과위원회, 연구위원회 간사가 간사 중에서 중간사를 선임하도록 하는게 좋겠고 그 나머지 행정 연구위원장은 그래도 연구위원장이자 이것만 바뀌면 되지않겠느냐 수정안을 했으면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말씀을 할테니까 질문을 하면 답변을 또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위원회 연구위원장은 그냥 놔두고 각 연구위원회 간사 중에서 중간사를 호선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김정규 의원이 발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議長 李敏衡: 지금 김지운의원이 개인이 아니라 소위원회 위원의 한 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는 것입니다.

○俞鎭武 議員(의석에서): 지금 여러 의원들이 시간 낭비를 너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칙에 의의가 있다면 1조부터 12조까지 하나하나 검토해서 통과된 안에 대해서 재론하지말고 12조까지 중구난방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하면 한건도 회의는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조부터 차례차례로 진행을 의장님이 하셔가지고 마지막 12조까지 마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議長 李敏衡: 그럼 여기서 축조심의를 다시 하실까요?

([다시 합시다]하는 이 많음)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여기서 다시 축조심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구성이 되서 거기서 축조심의를 끝났으면 이런 말씀을 안해도 되는데 아직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 이미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가 끝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성해 주신 사항입니다.

○金鍾煥 議員(의석에서): 자꾸 이렇게 논의 안되면 시간이 많이 흘러 갑니다.

이의가 없는 사항은 그냥 통과를 하시고 이의가 있는 조항은 다수결 원칙으로 해서 통과를 해 주십시오.

○議長 李敏衡: 그러면 시간이 가기때문에 제가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결성을 해 주셨습니까마는 다시한번 1조에서 부터 그대로 묻고 넘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조, 목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조, 기능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조, 임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조, 구성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많음)

○申晉玉 議員: 4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단 “최초 구성되는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할 수 있다”를 “없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연구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연구위원회 자체에서 위원장을 아까 하던 식으로 호선 내지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있다가 삭제하든지 없다고 고쳐쓰든지

○議長 李敏衡: 그러면 2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는 단서를 빼버리자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할까요? 단서를 빼자는 데에

([빼는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단서를 빼자는 데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원안대로 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장내소란)

18 : 38

○ 議長 李敏衡 : 현재 재적의원 43명 중 찬성이 30, 반대가 10 그러니까 삭제하자하는데 찬성이 30, 반대가 10, 기권이 세 분해서 제4조 구성에 있어서 단서 조항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다음 4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金鍾煥 議員(의석에서) : 3항에 보면 아까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 조금 전에 김지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제분과 6개 분과 중에 간사로 계신 분 중에서 호선을 해도 좋다고 봅니다.

○ 議長 李敏衡 : 아니 이것은 위원회 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5조, 연구위원회 종류.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6조, 다시한번 의의를 묻겠습니다.

제6조 1. 의회운영연구위원회는 의장단 및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한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각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전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그 대표 3항의 대표간사 얘기 했는 데 의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이것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규의원님 다시한번 말씀하시죠?

○ 金正圭 議員(의석에서) : 행정위원장이 이 운영위원회 간사가 된다는 것은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議長 李敏衡 : 폐지를 하고 어떻게 간사를 선출하느냐 이런 얘기죠?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하는 이 많음)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그럼

(찬성하는 이 많음)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는 의회에서 호선한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렇게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세요. 절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그 다음에 7조. 연구위원장과 간사.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8조. 대표간사가 하는 임무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십니까?

(김정규 의원 이의표시)

네, 김정규 의원님.

○ 金正圭 議員(의석에서) : “대표간사가 지금 각 연구분과위원회 독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다시한번 읽어 보시더라도 대표간사의 권한이 너무 많이 부여됐다는 것이 제가 본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간사라는 이 8조 1, 2항은...

○ 議長 李敏衡 : 1, 2항을 다 삭제하면 대표간사가 할 일이 없죠.

○ 金正圭 議員(의석에서) : 이 대표간사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議長 李敏衡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왜 대표간사가 필요하냐면은 연구위원회에서 어떠한 안을 발의하고자 해도 연구위원회 위원수가 12인 이하에서 한 위원회가 보통 7인 정도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구위원회에서 발의 하고자 할때에 7인만 가지고는 발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안을 발의하고자 했을 적에 이 발의자를 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제 고충을 말씀드리죠. 자, 누구한테 찾아가서 서명을 받고 누구한테는 안받으면 왜 누구한테는 받고 누구한테는 안받느냐, 그러면 발의하시는 분들이 손수 와가지고 발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안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간에 연구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셨어요. 이제 연구위원회에서 발의를 하시는데 독자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간사가 타위원회와

협의해서 이것을 발의하도록 주선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7인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발의를 못하시죠. 타위원회와 합동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 주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대표간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 金鍾煥 議員(의석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까.

대표간사라는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직제분과 위원장이 연구위원회 위원장한테 직접 발의한 안건과 의결사항은 관련 민원을 제출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제분과 위원장님이 크게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연구위원회 간사가, 예를 들어서 간사중에서 대표간사로 되셨는데 직제분과 위원장이 또 거기다가 올린다면은 어느 계통인지 사실상에 좀 어렵습니다.

위계 질서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분과 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직접 올리실수 있다고 봅니다.

○ 議長 李敏衡: 그러니까 안을 내는거는 각 연구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이 낼 수 있습니다. 내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 얘깁니다.

그거를 주선해서,

○ 金鍾煥 議員(의석에서): 직접 그걸 받으셔도 번거롭지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이면 청원 위원장님이,

○ 議長 李敏衡: 아니, 청원이나 특별위원회에서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능한데,

○ 金鍾煥 議員(의석에서): 그래야만이 직제분과 위원장님이,

(발언신청하는 이 있음)

○ 議長 李敏衡: 네. 이만재 의원님.

○ 李萬載 議員: 그 8조에 대표간사는 꼭 필요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일관성있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각 위원장님들이나 각 위원회 간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다보면은

일관성이 없어지고 또 대표간사가 무슨 큰 직책이라고 거기에 따른 권한이 많이 부여되고 물론 제가 김정규의원이나 김종환의원님의 말씀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대표간사가 하는 일이 흔히 우리가 여기서 무슨 권력의식이라든가 무슨 권위의식이라든가 이런걸 갖고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조항에 있는것처럼 그대로 의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안에 찬성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발언신청하는 이 있음)

○ 議長 李敏衡: 가능하면 발언 안하신 분 중에서 누가 발언을 하시죠.

네. 김승태 의원님

○ 金承泰 議員: 별로 필요한 얘기도 안 하면서 자주 발언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장위3동에 김승태입니다.

우선 6조 3항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 표시하는 이 많음)

○ 議長 李敏衡: 그건 지나간 사항이죠.

○ 金承泰 議員: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법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고 상위법, 하위법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규정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6조 3항에 “의회 운영, 연구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그렇게 돼있는데 4조 3항에 보면은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간사는 분명히 구성안에 이 구성은, 여기 의회 운영위원회 뿐만아니라 모든 위원회에 해당되는 법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 조항으로, 거기에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6조 3항에서 다시한번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간사 문제를 다시 우리가 조항을 만든다면 우리가 조항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가지 대표간사는 8조, 우리가 축조 심의하고 있는 8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는 대표간사는 지금 어떻게 뽑는다든가 누가 대표간사가 된다고 그런 문제가 우선

현재 규정에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선 그 문제가 선임되어야 될 것이고 현재 6조에 3항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대표 간사라든가 이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할, 우리가 하고있는 사항이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간사가 이러한 지금 8조에 있는 대표간사가 하는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8조를 구태여 넣지 않아도 될 것이고 만약에 넣는다면은 대표간사가 어떤 사람이 대표간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조항이 신설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논의를 하고있는 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6조 3항 문제하고 제8조 문제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敏衡 : 여기 란에 특별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게 소위원회에서 구성할 적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 金鍾煥 議員(의석에서) : 지금 8조에 보게 되면은 1항과 2항이 거의 동일한 얘기입니다.

○ 議長 李敏衡 : 이게 보게 되면 제4조 6항에 보게 되면 김승태 의원님 말씀에 4조 6항에 보게 되면 “의장은 연구위원회를 총괄 조정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대표간사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가 대표간사가 되는데 그러면 대표간사가 할일이 뭐냐, 대표간사가 할 일이 뭐냐 하는것을 8조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간사가 할 일도 없이 대표간사만 뽑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그러니까 6조 3항 말씀이죠?)

네.

(김승태 의원-발언신청)

○ 金承泰 議員 : 본의원으로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4조 6항 제가 자세히 검토하지않고 여러분들에게 혼선 빚은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표간사가 할 일은 분명히 8조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표간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는 제가 4조 6항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무분하므로 제 발의에서 그건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6조 3항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4조하고 6조가 그대로 통과된다면은 지금 김정규의원이 수정안이나 8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조 3항 문제를 다시한번 여러분들이 논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敏衡 : 6조 3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사는 호선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된것을 다시 논의할 수 없고 8조 역시 대표간사도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며은 고맙겠습니다.

([통과합시다]하는 이 많음)

([찬반에 불입시다]하는 이 있음)

(김갑제 의원-발언신청)

네. 김갑제 의원님 한번만 더 말씀하시죠.

○ 金甲濟 議員 : 길음 3동에 김갑제입니다. 여러분,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으며 소위원회에다가 무엇을 일임해 주셨습니까? 나 이거 하나 묻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일단 소위원회에다가 일임해 주셨으면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일단 우리가 이거 운영하면서 이거 오늘 못했다해서 이거 다시 수정 못합니까? 분명히 다시 수정할수 있다라고 생각 한다면은 오늘 분과위원회 구성부터하고, ([그럼 본회의 할 필요 없잖아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소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위임해 줬으면은 이미 소위원회에서도 축조심의가 끝났다는 말씀을 무던히도 하였고 우리 의장님도 무던히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조심의한 이 자구를 지금 자구수정, 무슨 조의 수정을 하지말고 오늘 특별위원회를 우선 구성하시고 다음에 1차 본회의를 또 열어서 수정하는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장님도 여러가지의 고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여기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여러의원님들의 의사를 존경하면서, 이것도 그럼 원안통과할 것이냐, 오늘 밤새라도 수정을 해가면서 회의를 끝낼것인가, 이것도 표결에 붙였으면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밤새라도 심의, 토의할 것이냐,

(장내소란)

○議長 李敏衡: 네. 김갑제의원님, 알겠습니다.

잠깐 조용해 주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8조를 삭제할 경우 제4조 6항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조 6항의 대표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있고 대표간사가 있음으로서 해야 할 임무를 했기 때문에 이 임무가 너무나 업무가 비대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이 8조를 또 삭제하게 되면은 4조 6항이 문제가 됩니다.

통과해 주신 사항을 또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8조를 좀 양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고치면 앞에걸 또 고쳐야 하니까.

([찬반에 붙여요]하는 이 있음)

([표결에 붙여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제8조 대표간사에 대한 건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 대표간사를 수정하는 안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제8조를 수정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8조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절대다수로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9조로 넘어가겠습니다.

9조, 의원의 임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그 다음에 제10조 회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申晉玉 議員-이의표시)

네. 신진옥 의원님.

○申晉玉 議員(의석에서): 제10조 회의 1항에 “연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구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의회에 연구위원회의 규정이 과연 통과가 된다고 보면은 연구위원회에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이것을 인정을 하셔서 의장님의 사전 승인까지도 받아, 연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검토하는데 자료가 있으면 연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거지. 여기에 연구위원회 회의 소집까지 의장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이 연구위원장이 소집을 하느냐, 이것은 문제가있다고 봅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소집한다”는 삭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야만이 2항에 보면은 연구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할 안건 및 자료는 연구위원장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회의 3일전까지 의장단에게 배부를 한 사항이니가 1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사전 승인을 받아왔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議長 李敏衡: 네. 그러면 “연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연구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절대다수네요. 목소리 들어보니까요. 그러면 10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10조 통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의결의효력 및 보고,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없으시면 부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2. 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의한 연구위원회의에서의 직위를 대외적으로 기록 표시하여 사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칙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연구위원회

규정안은 일부 수정해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위원회 의원 배정과 위원장 호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로부터 의원 배정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구위원회가 급한것은 아니니까 조금 있다가 구성을 할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다음에 합시다]하는 이 많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아까 특별위원회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바로 구성을 해서 임무에 들어가야 되고 연구위원회는 그렇게 시간이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라와 있는 안건이 있기 때문에 며칠후에 바로 또 임시회의를 두 세번 또 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안에 따라서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희망도 좀 들어보고 해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은 규정안만 오늘 통과를 하고 의원 배정이나 구성은 다음 회의때 구성하는 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다수로 오늘은 규정안만 통과하고 다음 회의때 의원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이 있음)

○ 金鍾煥 議員: 존경하옵는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회의에 대해서 몇말씀 올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한 저는 나이어리고 자질도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이 회의에서 소위원회에서 이미 구성된 것을 왜 개정하여야 하나고 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이 안건이 별 대수롭지 않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것 같으면은 이 본회의를 시작할 필요도 없는것이고 이 자리에 참여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이 오고가고 하는지

대단히 젊은이로서 불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회의는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절대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지하고 적극성 있는 회의가 되어야하고 원만한 회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다수결의 원칙으로써 하였으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아무도 이의가 없었지않습니까? 저희가 소수지만 “아니면 아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있을수 있는건데 표결에 불인결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이미 정한 바를 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 의장님도 그렇습니다.

의장님도 전부 생각이 옳은것양으로써 이야기를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의장님은 우리 의원들중에 잘못된 분이 단 한분이라도 나오시면 다수결의 원칙으로써 표결에 불인단든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 의장님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시는것은 좀 언어편파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회의는 가급적 제고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하는 이 있음)

○ 議長 李敏衡: 네, 지금 신상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조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 金甲濟 議員(의석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상당히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 저는 이 안건을 토의하지 말고 심의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었고 너무나 시간이 걸려서 지연이 되니까 그렇게 몇분 의원이 번갈아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합니다.

○ 議長 李敏衡: 지금 신상발언을 계속 하시다보면 회의가...

○ 金甲濟 議員(의석에서): 표결이 아무런 수정 없이 통과될 것이 여러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사였다는 얘기입니다.

○ 議長 李敏衡: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원 여러분 협조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연구위원회 구성은 우리 많은 의원님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이 좀 더 발전적으로 잘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9시 03분

6. 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 件

이번 임시회 서명 의원을 선임해야 되겠는데 그간 회의때마다 순서에 따라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도 동 순서에 따라서 이번 회의의 서명 의원은 김길태 의원님과 김광호 의원님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두분 서명 의원을 선임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김길태 의원님과 김광호 의원님, 서명 의원으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성북구청장이 초청하는 성북구 간부와 우리 의원들간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폐회

出席議員 名單

崔哲模	李敏衡	鄭喆植	申晉玉	申宗鉉
吳采泳	卜定安	金吉泰	金光鎬	韓春子
金炯九	蘇正煥	李萬載	權赫騏	李天浩
安敦洙	申夫浩	金榮植	黃義揮	李明煥
金德守	徐化錫	朴演洙	金甲濟	俞鎮武
徐海善	朴德基	李鍊垌	金知雲	千福成
柳成烈	羅光洙	趙基燦	閔應說	洪清一
李三田	安傑瑢	金承泰	崔桂洛	鄭昌萬
金正圭	黃鎬山	金鍾煥		

특별위원회의석배정 추천명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김갑제	김길태	김광호	권혁기
김정규	소정환	김덕수	김종환
김지운	안걸용	김승태	박덕기
김형구	안돈수	김영식	신쾌호
민용설	오채영	라광수	이명환
박연수	이연경	유진무	조기찬
북정안	정창만	이삼전	천복성
서화석	최계락	정철식	최상열
서해선	한춘자	최철모	황의휘
신종현	이민형	이민형	이민형
신진옥	홍청일	홍청일	홍청일
유성열			
이만재			
이천호			
황호산			
이민형			
홍청일			